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9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2
※ 참고자료	
1.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개요	8
2. 백년소상공인 지정 현황(지역별)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방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Ⅲ. 검토의견

1.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②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를 추가하고 있음(안 제16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u><신 설></u>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u>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신 설> <신 설>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 9. (현행과 같음) 10. <u>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u> 11. <u>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u>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¹⁾으로서 일정한 요건²⁾을 갖춘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³⁾할 수 있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바, 2026년 기준 14억 7,200만원의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⁴⁾되어 있음. 또한, 직접적인 지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생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원 외에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백년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 부여)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음(아래 자료 참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가. 공통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정기간 종료일 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 가능

나. 공통 인증 · 홍보지원

- (인증) 지정서, 인증현판·스토리보드 제공,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특례 지원
- (매체홍보) 종합홍보에 따른 방송, 신문, SNS 등 ‘백년’ 브랜드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입점지원, 민관 협업 등을 통한 플랫폼 입점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예정)

다. 선택 연계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방식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스케일업)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우대(가점)
혁신성장 촉진자금		• (사업) 정책자금 신청 대상 운전·시설자금 대출 - (일반형)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지원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사업) 사업장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일반형, 선도형, 렌탈형, SW형	우선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경영안정 컨설팅	• (사업) 찾아가는 1:1 교육	우선지원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사업) 조합 공동장비 구입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일반, 공동장비 최대 0.5억원~3억원	우대(가점)
	판로지원	• (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박람회 등 입점지원	우대(가점)
소공인 지원사업	판로개척	• (사업) 온·오프라인·수출 등 판로 지원	우대(가점)
	스마트공방	• (사업) 자동화 기기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별도트랙
	클린제조환경	• (사업) 안전환경 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우대(가점)

* 연계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별 모집공고 참고,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6호, “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신규지정 모집 공고, 2026. 3. 11.

개정안의 취지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문화 ·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상공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역사 문화와 결합한 로컬 브랜딩이 가능해짐으로써 대형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일정 부분 실현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직접용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안 제16조의4제1항제11호)의 경우 대외 변수에 민감한 관광 경기에 따라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기존 일반 소상공인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을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집행 단계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자금 지원 우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동 법 시행규칙⁵⁾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이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행중⁶⁾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제한적이며 다른 정책 대상과의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평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6) 가)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나)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리대출)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일반) 업력 무관 제조업 영위 소공인
 -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참고자료】

1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법적 정의)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 개정('24.1.16)으로 백년소상공인 법적 지원근거 마련('24.7.17 시행)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 (지정) 8년간('18~'25) 총 2,326개 지정('25.12월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예산(억원)	6	8.2	13.4	58.5	76.9	22.9	4.27	4.27	194.4
백년가게	71	204	339	427	230	86	-	50	1,407
백년소공인	-	71	181	390	175	52	-	50	919
합계	71	275	520	817	405	138	-	100	2,326

* '21년부터 내역사업 신설, 전용예산 반영 / 25년 신규지정 경쟁률 7.9:1(역대 최고)

□ (정책대상) '23년 소상공인 790.7만개사 중 백년소상공인 업력 요건 충족 대상은 82.9만개사*(10.4%)

* 제조업^{15년 이상} 40만개사, 비제조업^{30년 이상} 42.9만개사

** 현재 지정된 백년소상공인(2,326개사)은 정책대상의 0.3% 수준(전체 소상공인의 0.03%)

□ 지원내용

○ (지정·홍보) 인증서 및 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등

○ (판로지원) 민관 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획전, 전용판매장 지원 등

○ (기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지원(강한소상공인,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정책자금 등 9개 사업 가점·우선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특례 부여 등

□ '26년 예산 : 14.72억원('25년 대비 10.5억원 ↑)

* 제도운영 9.98억원, 전용매장 운영 1.74억원(2곳), 브랜드홍보 3억원

2

백년소상공인 지정 현황(지역별)

① 백년가게 선정현황(누계) : 총 1,407개사(선정 1,537, 지정취소 △130)

○ 지역별 현황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192	13.6	10	충남	79	5.6
2	서울	168	11.9	11	인천	50	3.6
3	경남	119	8.5	12	광주	65	4.6
4	경북	127	9.0	13	대구	79	5.6
5	전북	89	6.3	14	대전	44	3.1
6	충북	88	6.3	15	울산	26	1.8
7	부산	82	5.8	16	제주	21	1.5
8	강원	94	6.7	17	세종	8	0.6
9	전남	76	5.4	합 계		1,407	

* 수도권 29.1%, 경상 30.7%, 호남·제주 17.8% 충청·강원 22.3%

○ 업종별 현황

구분	음식점	도소매	서비스	기타	합계
개수	933	318	114	42*	1,407
비율	66.3	22.6	8.1	3.0	100

* 단일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35, 숙박업 3, 농업 1, 축산업 1, 건설업 1, 운수업 1

② 백년소공인 선정 현황(누계) : 총 919개사(선정 1,019, 지정취소 △100)

○ 지역별 현황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209	22.7	10	충남	36	3.9
2	서울	119	12.1	11	인천	38	4.1
3	경남	63	6.9	12	광주	46	5.0
4	경북	65	7.1	13	대구	55	6.0
5	전북	60	6.5	14	대전	54	5.9
6	충북	37	4.0	15	울산	12	1.3
7	부산	51	5.5	16	제주	7	0.8
8	강원	34	3.7	17	세종	4	0.4
9	전남	37	4.0	합 계		919	

* 수도권 36% 경상 32%, 호남·제주 12% 충청·강원 20%

○ 업종별 현황

구분	기계금속	의류	인쇄	식료품	기타*	합계
개수	286	106	83	179	265	919
비율	31.1	11.5	9.0	19.5	28.8	100

* 전자부품 28개, 공예도자 11개, 기타(플라스틱, 펄프종이 등) 226개